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정도 의원

2. 찬 성 자 : 김민성 의원 외 7인

3. 제안이유

- 조례 전반을 정비하며, 구미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게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일관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위원회 관련 조례를 준용 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 현행 조례만으로는 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제11조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각종 위원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나, 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면 심사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어 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는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저해하여 위원회의 존재 가치를 유명무실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향후 신속한 안건 처리보다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는 집행 기관 부서 전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